

창원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8나51185(본소), 2018나51192(반소) 판결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8나51185(본소), 2018나51192(반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 18 선고 2016가단10600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윤근, 이지은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현목

변론 종결 2020. 12. 11.

판결 선고 2021. 1. 15.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 18. 선고 2016가단106004(본소),

2017가단1298(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대 840m²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23, 22, 21, 20,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토지 82㎡ 지상에 소재하면서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 현황선인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 토지 82㎡를 인도하고, 52,577원 및 2017. 5. 1.부터 위 'ㄴ' 부분 토지 8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96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경남 함안군 C 대 84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23, 22, 21, 20,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82㎡ 지상에 소재하면서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 현황선인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 토지 82㎡를 인도하고, 357,520원 및 2017. 5. 1.부터 위 'ㄴ' 부분 토지 8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C 대 84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23, 22, 21, 20,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82㎡에 관하여 2014. 2. 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당초 위 'ㄴ' 부분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6. 3. 7. 접수 제42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각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1, 12행의 "ㄴ 부분의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은 2007. 1. 1.부터 2017. 4. 30.까지 합계가 357,520원이고, 2017. 5. 1.부터는 월 18,760원이다."를 "ㄴ 부분 중 옹벽 (10.26m²) 부지 부분의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은 원고가 C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16. 3. 7.부터 2017. 4. 30.까지는 합계 52,577원[= 62,137원{= 52,920원 × 300일(2016. 3. 7.부터 2016. 12. 31.까지)/366일 + 18,760원(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 × 원고 지분비율 11/13]1) 이고, 2017. 5. 1.부터는 월 3,968원(= 월 4,690원 × 원고 지분비율 11/13)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C 중 ㄴ 부분 지상에 옹벽을 설치하고 ㄴ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옹벽을 철거하고, ㄴ 부분을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ㄴ 부분 중 옹벽 부지 부분의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담이득으로 원고가 C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6. 3. 7.부터 2017. 4. 30.까지 합계 52,577원 및 2017. 5. 1.부터 ㄴ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96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반환할 차임 상당 부담이득액은, 위 돈을 초과하여 2007. 1. 1.부터 2017. 4.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담이득 합계 357,520원 및 2017. 5. 1.부터 ㄴ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18,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7, 8행의 "ㄴ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를 "ㄴ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로, 제11 내지 15행의 "주위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전 소유자들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전 소유자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원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를 "원고는 피고에게 ㄴ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로, 제6면 제11행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를 "반소청구"로 각 고치고, 제6면 제7, 8, 9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 명의로 M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4. 2. 3.부터 20년간 C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21호증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피고가 1994. 2. 3.부터 또는 옹벽을 설치한 2003년 이전 시점부터 이미 ㄴ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양상익

판사강진명

판사이병호

별지

1) 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C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6. 3. 7. 이후 비로소 발생하는 점, 원고의 지분비율(11/13) 및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료 합계 18,760원을 '매월' 임료로 착오한 점(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Q 경남지사에 대한 감정축탁 결과 참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